#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97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이종배·이종욱·김성원

서천호 · 성일종 · 엄태영

진종오 · 신동욱 · 김소희

김예지 · 조배숙 · 송석준

정희용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 법률 제 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을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시 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26조제2항 중 "평가 및 산정 근거"를 "평가·산정 근거(구체적인 산 정 산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 ① ~ ③ (생 략)	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	<b>4</b>
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	
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u>사람 중</u> 국토교	<u>사람으로서</u>
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
	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②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	

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조사 · 평가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u>평가·산정 근거(구체적인</u>	<u>산</u>
정 산식을 포함한다)	